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3일

3. 제안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명시(안 제5조)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우리나라 식품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은 지역농산물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후방 연쇄효과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제공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김치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국내 김치 산업 규모('19년)

'19년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 총 수요량은 1,897천톤(10천톤 감모)

○ 총 공급량 1,907천톤은 외식·학교급식 및 가구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성

○ 총 수요량은 1,897천톤은 외식·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2%), 가구 수요 1,067천톤(56.2%), 수출 30천톤(1.6%)으로 구성

- 국내유통 상품김치는 752천톤(국산 446천톤·59.3%, 수입산 306천톤·40.7%)

< '19년 국내 김치산업 규모 >

(단위: 천톤, %)

공급 수요	국산				수입산	총공급	국내유통 상품김치 (c+d)
	가정제조 (a)	외·급식업체 등 제조(b)	상품김치 (c)	소계 (a+b+c)	상품김치 (d)	합계 (a+b+c+d)	
계	747	368	486	1,601	306	1,907	752
가정	747	-	283	1,030	37	1,067	320
외·급식 등	-	368	163	531	269	800	432
수출	-	-	30	30	-	30	-
감모*	-	-	10	10	-	10	-

* 출처: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 농림축산식품부·aT(2020년)

* 국산 상품김치의 재고 및 일부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총 공급-총 수요 불일치 10천톤 발생 추정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0년)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 내 판매량	국내 판매액	수출량	수출액
소계	4,178,309	84,549	1,199,120,685	421,084	1,319,144,522	36,521	136,554,978
충청북도	908,220	84,549	235,110,378	76,811	244,064,285	7,721	33,348,597

* 2020년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에 따른 것이며, **우리도의 김치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전국 2위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김치산업 진흥법」의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 김치는 식품의 일종이며, 김치산업은 식품산업의 일부에 속하여 「식품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2011년에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 「김치산업 진흥법」은 김치산업의 기반조성과 김치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김치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법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비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제11조), 김치연구소 설립과 운영·관리 지원(제13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에 대한 지원(제16조),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제17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제20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한 우선구매(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2016.01.0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2014.01.01
경기도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1.08
충청남도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6.10
전라남도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0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1.04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김치”, “김치산업” 등의 용어를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의함
 -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5년마다 계획의 목표와 방향, 김치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김치산업 육성 시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
 -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추진, 김치문화 계승·발전,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 등의 사업은 김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6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는 진흥계획의 수립,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검토 의견

-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치 재료의 수급 불안정과 김치 제조업체의 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제조시설 현대화와 유통체계 개선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김치산업을 보호·육성함은 물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우리도는 김치생산액, 수출액, 중견김치 업체수 등이 각각 전국 2위이며, 김치원부자재 및 절임배추 주산지로서 김치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김치산업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0년)

(단위: 톤, 천원, 달러)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 내 판매량	국내판매액	수출량	수출액
소계	4,178,309	464,165	1,199,120,685	421,084	1,319,144,522	36,521	136,554,978
서울특별시	25,264	6,705	20,572,193	6,715	26,307,316	-	-
부산광역시	212,441	9,505	25,110,013	9,248	30,002,350	-	-
대구광역시	20,828	3,488	9,874,611	3,502	11,734,581	-	-
인천광역시	58,437	15,865	32,156,821	15,632	39,780,154	122	241,189
광주광역시	38,096	5,324	17,986,978	5,261	23,135,075	12	65,749
대전광역시	17,363	3,804	8,908,683	3,788	9,989,983	-	-
울산광역시	6,016	3,004	3,962,423	3,004	5,003,794	-	-
세종특별자치시	2,399	532	1,444,304	529	1,863,654	-	-
경기도	1,248,872	122,805	279,785,864	121,113	325,687,697	1,336	4,197,433
강원도	500,728	59,023	145,255,597	53,978	208,705,710	890	1,746,566
충청북도	908,220	84,549	235,110,378	76,811	244,064,285	7,721	33,348,597
충청남도	324,714	30,084	65,768,041	29,018	84,416,164	141	505,377
전라북도	347,180	20,052	55,179,546	18,684	60,095,371	1,263	5,057,817
전라남도	162,305	20,875	70,093,152	18,257	74,042,207	2,512	9,589,771
경상북도	106,860	29,517	79,646,897	26,633	77,478,835	3,397	11,153,974
경상남도	144,027	46,367	141,240,754	26,250	88,538,973	19,128	70,648,506
제주특별자치도	54,558	2,666	7,024,431	2,660	8,298,372	-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